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434호서식] <신설 2024. 3. 26.>

소득발생 내역

소득구분	상호	지급처	총수입금액 (총급여액· 총연금액 포함)	원천징수 세액	업종코드	단순경비율(%)

※ 제출 대상은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92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,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로 한다.